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6.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0. 6. 23
- 다. 상 정 일 자 : 2000. 6. 23 (제8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노 양 헌

나. 개정사유

- '98. 12. 31일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99. 7. 28일 3,000원으로 세액을 인상 하였으나,
- 2000년도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반영 항목중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차등 교부됨에 따라 타 시,군의 인상율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고 부과 할 수 있는 금액 10,000원의 50%인 5,000원으로 상향조정 조례를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제20조(세율)1항 제1호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는,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액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 2000년도 지방 교부세 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차등 교부되도록 되어있어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임.

-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형편으로써, 세수를 증대키 위한 교육책으로 생각되나
 - 해남과 완도군이 기 5,000원으로 인상 하였으며, 나주시, 강진·진도군 등도 인상할 계획에 있으므로 재정 확충 및 시군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도 차제에 일정 수준 인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세금의 인상은 곧바로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세 저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세금의 인상은 곧바로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세 저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와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세율) 제20조1항1호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내지 제4항, 제22조의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 하는 경우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③ 제20조 제1항, 제36조 제1항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액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p>제20조(세율)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0조(세율)① - - - - - - - - - -</p>
<p>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u>3,000원</u></p>	<p>1. 개인 가. - - - - - - - - - : <u>5,000원</u></p>